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21
----------	------------

제안년월일: 2021년 11월 26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병물 아리수 공급처를 단수 대응 및 재난 구호용으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보다는 공급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 중복되거나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조례안의 제명을 수정함
- 내용 중 “사용 제한”을 “사용”으로 함(안 제1조, 제4조제2항제3호, 제10조)
- 중복 및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병물 아리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아리수의 사용 제한”을 “아리수 사용”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안 제3조를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4조제2항제3호 중 “사용 제한”을 “사용”으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을 “(병물 아리수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하게 하는 등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안
<p><u>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u>설치와 청소 등 위생 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생략)</p>	<p><u>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병물 아리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u>설치·관리와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u>-----.</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u></p> <p><u>2. (현행과 같음)</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p>	<p><u>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u>설치·관리와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u>-----.</p> <p>제2조(정의) ----- ----- -----.</p> <p>1. (개정안과 같음)</p> <p><u><삭제></u></p> <p><u>2. “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현행과</p>

<신 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음수대의 설치·보급 및 음용을 촉진하고 병물 아리수의 공급 및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 시장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사용하게 하는 등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음)

<삭 제>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 2. (개정안과 같음)

3.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개정안과 같음)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시장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설치·관리와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시장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u>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 <u><신 설></u></p> <p>2. (생 략)</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2. (생 략) <u><신 설></u></p> <p>③ (생 략)</p>	<p><u>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설치·관리와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u></p> <p>③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시장은 일
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